

의안번호	2218336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6.6.11.
추계번호	26C2138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 (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.(제2항) ○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 (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(안 제32조)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,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현물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, 지원 단가, 지원 주기 및 지원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, 현실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지원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금·바우처·현물 등 지원 방식과 지급 수준에 대한 합리적 가정이 어려움

- 또한 기존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운영·확대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지원 체계와 기존 사업의 관계 및 추가지원 규모를 현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움
 - 성평등가족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(9세 이상 24세 이하)을 대상으로 연간 168,000원(월 14,000원)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“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”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 - 또한,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하는 “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”을 시행할 예정이며,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·소득과 무관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임
 -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지원체계가 위 사업들과 연계·조정될지의 여부, 추가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현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